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254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254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50305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원

변론 종결 2021. 8. 27.

판결 선고 2021. 10.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50305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사이에 2019. 8. 13. 체결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9. 2. 접수 제10021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철

판사권혁준

판사박미선

별지